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 활용에 대한 고찰

김한승* · 최재영**

A Study on Utilization of Resource Dispute Problem in the Caspian Sea in Geography Education

Hanseung Kim* · Jae Yung Choi**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카스피 해 자원 분쟁 문제를 고찰하고, 이 문제가 지나는 지리교육에의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원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는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볼 것이냐? 바다로 볼 것이냐’에 달려 있는 쟁점으로 보인다. 즉, 대상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법적용의 기준의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자원의 배분 방식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후, 러시아와 1991년 소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3국간의 외교적, 정치적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기반한 3종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카스피 해 연안 지역의 자원 갈등 사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호수-바다 논쟁을 넘어,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접근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카스피 해 자원 분쟁, 지리교육, 국제법, 지역의 특수성, 글로벌 스케일

Abstract : The resource conflict in the Caspian Sea, frequently presented as a classic example of a resource conflict in geography textbooks, is often portrayed as a question of whether the Caspian Sea should be seen as a lake or a sea. In other words, the issue is described to be over the geographical classification of the Caspian Sea, which dictates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procedure for resource distribution. In this research, we contemplated the resource conflict in the Caspian Sea in geography education by examining it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diplomatic and political responses of the three countries that declared independence from Russia and the 1991 Soviet Union. We then analyzed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Reform and the resource conflict in the Caspian Sea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s from three different publishers. Upon this analysis, we proposed an alternative solution to emphasize regional specialty as well as approach on a global scale, beyond the lake/sea controversy in dealing with resource conflicts in the Caspian Sea in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The resource conflict in the Caspian Sea, Geography education, International law, Regional specialty, Global scale

*서울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skahn@hana.hs.kr)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mage7@snu.ac.kr)

I. 서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토와 자원의 갈등에 대한 문제 파악과 해결’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앞 다투어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을 이에 대한 사례로 다루고 있다. 이 사례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서 제시된 이후 동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도 활용되었으며, 현행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을 받은 3개 출판사 모두 이 문제를 세계지리 교과서의 본문 또는 사례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 교과서들은 하나같이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과 관련하여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호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바다’와 ‘호수’는 대단히 지리적인 주제로 지형, 기후 등 자연 지리적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교통, 인구, 자원 등 다양한 인문 지리적 주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지리적인 주제가 자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3개 출판사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호수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그 질문만큼 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리교육의 차원에서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며, 지리학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의 자원 갈등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스피 해 자원 갈등과 관련하여 카스피 해가 바다인지 호수인지의 문제를 지리 교육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면서 근원적인 논의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카스피 해 지역에 대한 자연적, 인문적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지역을 호수로 볼 경우와 바다로 볼 경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카스피 해 영유권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오고 어떠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는지 국가 간 조약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외교적, 정치적 분석을 통해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리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카스피 해의 지리적 조건

현재 카스피 해는 러시아 남서부 말단, 아제르바이잔 동부,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카자흐스탄의 남서부, 이란의 북부와 접하고 있으며,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은 카스피 해와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30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이다(그림 1). 카스피 해라는 지명은 카스피 해 북안에 거주했던 카스피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김미선 역, 2014). 카스피 해는 바다로 보아야할까, 호수로 보아야할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카스피 해의 자연적 조건과 인문적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적 조건

카스피 해는 카프카스 산맥과 중앙아시아 스텝지대에 위치하며, 남북 약 1,200km, 동서 간 평균너비 약 320km, 한반도 1.7배의 면적(386,000km²)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내수(inland body of water)이다(제성훈, 2011). World Lakes Website에 따르면, 카스피 해는 평균 수심 187m, 최대 수심 1,025m에 용적이 78,200km³에 달하는 세계 최대 용적을 자랑하는 호수이며, 물이 바다로 배수되지 않아 오염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¹⁾ 카스피 해로 유입되는 강은 130여 개에 달하지만, 유입되는 수량의 80%는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오는 볼가 강이다(Aladin and Plotnikov, 2004). 그런데 이 볼가 강을 따라 산업 및 가정 폐수가 쏟아져 들어와 카스피 해 북부 유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의 카샤간과 텡기즈 광구에서 처리 과정 없이 방출되어 온 석유, 폐기물, 황화수소와 메르탄 갑 등의 유독 가스들은 환경오염의 심각도를 높이고 있다(이경완, 2011).

카스피 해의 특징 중 하나는 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리터당 10~13그램 정도의 염분을 지닌다는 것인데, 이는 카스피 해의 기원을 고대 테티스 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Aladin and Plotnikov, 2004). 제성훈(2010)은 카스피 해가 세계 최대의 내수라는 거대한 규모와 염도 때문에, 카스피 ‘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전통적으로 바다로 인식되고 있으나, 면적이나 염도를 기준으로 바다와 호수가 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는 본 논문에서 후술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그림 1. 카스피 해 주변 국가들

122조에 근거하여 “대양과의 연결여부”가 법적 핵심 기준임을 강조한다. 카스피 해의 경우 자연적으로는 아니지만, 운하로는 바다와 연결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적 연결로 카스피 해가 국제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호수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성훈(2010)은 “모든 연안국들의 합의에 의해 바다의 지위 선언이 가능”(제성훈, 2010:58)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카스피 해의 바다·호수 논쟁은 오히려 연안국들 사이의 합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문적 조건

그렇다면 카스피 해의 연안국들에 대해 알아보자. 카스피 해 연안국은 구소련 체제에서는 2개국(이란, 소련)이었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5개국(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늘어났다(박주식, 2004). 연안국은 아니지만 동쪽 지척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카스피 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이다(김연구·엄구호, 2006).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카스피 해의 서안은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가며 동서와 남북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그런 만큼이나 갈등과 분쟁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권오영, 2015).

카스피 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카스피 해의 전통적 연안국인 러시아와 이란(페르시아)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포르트 대제의 페르시아 원정(1722-1723)이후 카스피 해에 대한 지배권을 페르시아와 함께 누렸고, 심지어 19세기 초에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독점적인 지배권을 장악해버린다(제성훈, 2010).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소련이 탄생하자 서구 열강들이 카스피 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지만(정옥경, 2006), 이에 소련이 1921년, 1935년, 1940년에 이란과 카스피 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 조약들을 맺게 되면서 소련이 1991년 해체되기 전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스피 해는 “지정학적 안정시대”(제성훈, 2011:130)로서 소련과 이란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었다(제성훈, 2011).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중앙아시아·카스피 해 지역은 강대국들의 패권을 다투는 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된다(강삼구, 2010).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카스피 해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에너지 자원이 놓여 있다. 카스피 해는 서남아시아의 석유가 개발되기 전인 19세기부터 러시아에 의해 유전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러시아는 1901년 바쿠와 흑해 사이에 송유관을 건설하기도 하였다(박주식, 2014). 20세기 초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아제르바이잔은 산유국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소비에트혁명과 함께 소련 전용 산유지가 되어버렸다(이장규·이석호, 2006). 카스피 해의 에너지 자원 분포는 불균등하여 주로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근해에 밀집되어있으며, 다른 세 나라는 유전 및 가스전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제성훈, 2011). 따라서 구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에는 카스피 해에서 석유생산을 주도하는 두 나라,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유전 개발이 에너지 쟁탈전의 이슈였으며,²⁾ 2000년대 이후에는 두 석유생산국에서 생산된 석유가 어떤 송유관을 통하여 세계시장으로 연결될 것인가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양강 구도인 송유관 경쟁의 두 강대국은 다름 아닌 미국과 러시아였다(김연구·엄구호, 2006).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도 에너지 자원 수출 잠재력이 낮고, 각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배타적인 탓에 석유·가스 개발의 추진이 활발하지는 않았다(이성규, 2005).

최근 들어 카스피 해의 산유국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통화 불안과 저유가, 부진한 신규 유·가스전 개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위축되고 있으며,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역시 201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에너지경제, 2016년

11월 25일자). 이렇게 유가가 낮은 상황인데다,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과의 핵협상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느라 카스피 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단 덜한 상태이지만, 카스피 해를 둘러싼 ‘뉴 그레이트 게임’³⁾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뉴시스, 2015년 7월 14일자).

III. 국제법적 고찰

카스피 해 자원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세계 지리 교과서들이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볼 것이냐? 바다로 볼 것이냐?’라는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카스피 해가 바다인지 호수인지에 따라 어떤 법적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국제호수로 볼 경우의 효과

국제호수의 경우 국제적인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국제호수의 경우 연안국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폭 넓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호수 인접국 이외 다른 국가들의 호수 이용은 제한된다. 중간선 이외에 경·위도선, 육지경계의 연장에 의한 직선, 역사적 경계 등이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오대호, 빅토리아 호, 티타카카 호 등 현재 대부분의 국제 호수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지리적, 역사적 요인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있다. 국제호수의 경우 구글 지도에서 국경이 육지 경계선의 연장으로 명확히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카스피 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경이 그려져 있지 않다.

2. 바다로 볼 경우의 효과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볼 경우에는 1982년에 체결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해양법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연안국들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공해 자유 사용의 원칙

(해양법 협약 제87조; 이하 조항 번호만)」 등 해양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는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등 해양 주권에 관한 권리가 주어진다.

1)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영해란 연안국 기선 외곽에 설정된 일정한 폭의 수역으로서, 그 폭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제3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하층토에 미친다(제2조). 영해는 해양법이 적용되는 출발점으로 17세기 이후 국가안보, 해상범죄의 제압, 연안 어업권의 독점 등을 위한 목적에서 주장되었으나, 영토와 달리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정인섭, 2014). 영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해통항을 인정해야 하며(제17조), 영해 내라고 해도 외국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영해 외곽지역을 의미한다(제57조). 수역과 더불어 해저와 하층토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나, 상공은 포함되지 않는다(제56조). 1945년 트루먼 선언으로 연안국의 인접 해양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주장한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수역을 선포하였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다(정인섭, 2014).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 에너지 생산과 같은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제56조).

2)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 대한 해양법 협약 규정의 특징

영해의 경우 인접국이나 대항국의 주장이 상충된다면,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등거리선, 중간선에 의해 경계를 획정한다(제15조). 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우 400해리가 되지 않는 해역에서 양국이 각자 선포할 경우, 연안국 사이에 경계 획정 문제가 발생한다. 해양법 협약은 대항국과 인접국간 경계 획정이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해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해양법 협약에서는 경계

를 정할 때 달성해야 할 목적으로 “공평한 해결(an equitable solution)”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경제획정에 있어서 실제 적용될 구체적 법원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평한 해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는 ICJ 판례의 태도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1982년 해양법 협약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이 새로운 수역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전까지 영해 외곽의 하층토와 지하의 경제적 주권을 관할하던 ‘대륙붕’의 의미가 200해리 이내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정인섭, 2014). ‘대륙붕’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경계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83조), 본 연구에서는 1982년 해양법 협약 이전에 ‘대륙붕’에 대한 규정과 관련 판결도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다. 1958년 해양법 협약(이하 ‘대륙붕 협약’)에서는 공유대륙붕의 경제획정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만일 합의가 없고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륙국 사이의 ‘중간선’으로 하며, 인접국간에는 ‘등거리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대륙붕 협약 제6조).

3)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

ICJ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Denmark; Germany/ Netherlands, 1969 ICJ reports 3)에서 인접국 간 대륙붕에 관하여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당사국간 합의에 기하여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최홍배, 2000). 또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이며, 타국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형평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획정시 해안선의 일반적 형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대륙붕의 외형적 및 지질학적 구조와 천연자원의 존재, 연안선의 길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정인섭 등, 2012).

하지만, 이러한 대륙붕 경계 획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1977년 영불 대륙붕 중재 사건(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Arbitration between the U. K. and French Republic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에서 중간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른바 1980년대 3대 경제획정사건

(trilogy of cases)⁴⁾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획정의 법리를 제공하였다(이창위, 2005). 그 중 하나인 1984년 메인만 경제획정 사건(Cas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 v. USA, 1984 ICJ Reports 246)에서 ICJ는 경제획정의 기본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간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획정으로 인해 관련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적 행복에 재앙적인 영향(disastrous repercussion)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Northern Edge and Peak)과 미국 어민의 전통적 어로활동 지역(Great South Channel)이 적절히 배분되어 조지스 뱅크 지역의 해양영토가 분할되었다(정인섭 등, 2012). 그리고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 Malta, 1985 ICJ Reports 13)에서는 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서 ‘형평의 해결’이 단순한 조약상의 원칙 이상임을 밝히고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해안선 길이, 대륙붕 내 섬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정인섭, 2014).

이상과 같은 대륙붕 경제획정에 대한 ICJ 판례의 태도를 보면, 1960년대 잠시 등장한 대륙 연장설은 현재 주요 요소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것 보다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역사, 지리,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경계선을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점

카스피 해를 호수라고 본다면 호수 연안국들의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바다라고 본다면 연안국들의 합의보다는 국제 해양법 협약이 먼저 적용된다.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지역까지는 해안국가의 제한적 주권이 인정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해안국가의 주권이 제한을 받는다. 즉, 호수로 볼 경우에는 인접 국가들만이 배타적으로 항행할 수 있지만, 바다로 볼 경우에는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경제 획정과 관련해서도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본다면

호안 국가들의 협의에 따라 공동 사용이든 중간선의 원칙이든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본다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법리가 적용되어 지리적, 역사적 연원을 고려하여 중간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경계선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다나, 호수나에 대한 문제는 경계획정도 문제지만, 바다로 보아 해양법을 적용할 경우, 인접국 외 다른 국가 선박의 항해뿐만 아니라, 공해의 자유 이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V. 카스피 해 영유권에 대한 변화

1. 제정 러시아 시대의 카스피 해 조약

카스피 해는 1722년 전까지 북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다(정옥경, 2006). 1722년 표트르 대제의 ‘페르시아 원정’으로 체결된 ‘페테르부르크 조약’ 이후 러시아는 카스피 해 남부 지역도시인 길란, 마젠다란, 아스트라바드를 양도 받는 등 카스피 해 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시켰다(Shukuiurov, 2008). 결국 19세기 초 러시아는 페르시아와 두 차례의 전쟁(1차: 1804년-1813년, 2차: 1826년-1828년)을 치르며 카스피 해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다(제성훈, 2010). 제1차 러시아-페르시아 전쟁 이후 ‘굴리스탄 조약(1813)’을 통해 러시아는 조지아 병합 및 다게스탄에서 지배력을 강화하였고, 페르시아의 지배권은 카스피 해 서쪽 해안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제2차 러시아-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투르크만차이 조약(1828년)’을 통해 페르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지역과 나히체반 칸국에서 가지고 있던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카스피 해에서 단지 상업적 항해만 가능할 뿐 해군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정옥경, 2006).

2. 소연방 시대의 카스피 해 조약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소련이 탄생하자, 유럽 열강들은 카스피 해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1918년 9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를 점령하였고, 오래지 않아 다시 영국이 바쿠를 장악, 아제르바이잔의 독립과 석유 관련 계약을 추진하였다(박주식, 2014). 1919

년 영국은 카스피 해 남부에 위치한 페르시아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는 조약을 체결 하였다.(정옥경, 2006). 이에 1921년 소연방은 페르시아와 카스피 해에 대해 양국만이 배타적 권리를 갖는, 즉 제3국의 모든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조약을 맺는다(제성훈, 2010). 하지만, 조약의 특성이 군사적 정치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체결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눈에 띈다. 이 “우호와 협력에 관한 협정”(정옥경, 2006:386)은 카스피 해를 이란과 소연방의 바다라고 규정하고 자유로운 항해와 조업을 보장하였지만, 해수면에 국경선을 명확히 표시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자원 취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정옥경, 2006).

3. 소연방 해체 이후 카스피 해 법적 지위 논쟁

1991년 12월 21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서 소연방의 해체가 공식 선언되면서 카스피 해 주변에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의 분리 독립국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독립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지만, 카스피 해 자원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제성훈, 2010).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일련의 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은 1921년의 소연방-페르시아 협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카스피 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는 조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하였다(정옥경, 2006).

러시아는 당초 1921년 조약의 유효성 주장과 더불어 독립국들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제성훈, 2011) 하지만 1993년 10월 14일, 아스트라한 회담을 통해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이 임시적으로 등거리 분할의 원칙을 통과시키자, 러시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정옥경, 2006) 특히 1994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BP 등 서방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일명 ‘세기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의 영토를 거치지 않는 BTC(바쿠-트빌리사-제이한) 송유관의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제성훈, 2011). 카스피 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될 우려를 갖게 된 러시아는 1994년 12월 5일, UN 총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역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고, 새로운 법적 지위가 결정될 때까지 과거에 체결된 1921년 협약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며 ‘공

표 1. 카스피 해 영유권과 관련된 조약 및 협정 등

연도	명칭	체결국(참가국)	내용 및 결과
1722	페테르부르크 조약	러시아, 페르시아	러시아의 영향력이 남부까지 확대
1813	굴리스탄 조약	러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지배권이 서쪽으로 밀려남
1828	투르크만차이 조약	러시아, 페르시아	상업적 항해 외에는 카스피 해에 대한 페르시아의 지배력 상실
1921	우호와 협력에 관한 협정	러시아, 페르시아	양국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1993	아스트라한 회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페르시아	임시적으로 등거리 분할의 원칙 통과
1994	세기의 계약	아제르바이잔, 서방 메이저 석유기업	석유생산 계약
1998	공동합의문	러시아, 카자흐스탄	항해의 자유 등을 전제로 해서 분할
1998	공동 성명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20%의 동일한 섹터로 분할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반대)
2002	카스피 해 해저인접구역의 구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협정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물의 공동이용은 유지하되, 수정된 중간선으로 경계를 나눔.

* 정옥경, 2006; 제성훈, 2010; 2011을 참고하여 작성.

동이용(condominium)의 개념을 제시했지만, 독립 3국은 명백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정옥경, 2006).

1998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양국은 자유로운 항해, 적절한 조업기준, 환경보호의 보장을 전제로 해서 분할에 합의하는데, 이는 카스피 해 분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제성훈, 2010). 러시아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러시아가 1921년 협정을 고집한다면 신생 독립국들과의 관계가 경색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정옥경, 2006). 1998년 7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공동 성명을 통해 카스피 해의 바다와 수역 전체를 20%의 동등한 다섯 개 섹터로 분할할 것을 제안하였고,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제성훈, 2010).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결국 타협을 선택하며 물의 공동이용은 유지하더라도 국제법의 원칙과 카스피 해의 현실이 반영된 수정된 중간선으로 경계를 나누는 협정을 2002년 9월 23일 러시아와 체결하게 된다(정옥경, 2006).

정리하자면 카스피 해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둘, 즉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vs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제성훈, 2011).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가 자원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역외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

하고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이란 측이 주장하는 균등 분할과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수역 공동 이용, 바다 분할안은 모두 UN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 획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카스피 해 경계 획정 문제는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호수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논의가 되어 버린 것이다.

V.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및 교육과정에 기반한 활용 방안 고찰

1. 교과서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세계지리 교과서 3종을 분석하였다. 표 2와 같이 3종의 교과서 모두 카스피 해 분쟁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에서 자원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은 1~2페이지의 서술 분량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 갈등의 사례로 2~3가지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 중 모든 교과서에서 사례로 들고 있고, 그 분량 역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3종에서의 카스피 해 자원 분쟁

교과서	김종욱 등(2014)	위상복 등(2014)	권동희 등(2014)
단원	대단원	VI. 갈등과 공존의 세계	VI. 갈등과 공존의 세계
	중단원	1. 영역과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	1. 세계의 영역과 자원 분쟁
	소단원	(1) 영역과 자원을 둘러싼 분쟁 (5페이지)	(1) 세계의 자원 분쟁 (2페이지)
	소제목	자원을 둘러싼 분쟁 (1페이지)	바다에 있는 자원의 주인은 누구일까? (1페이지)
제시 방식	탐구 카스피 해는 호수인가? 바다인가?	본문	세계 속으로 - 카스피 해 주변 국가의 갈등
지도 제시	○	○	○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원 분쟁의 사례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원 분쟁의 사례로 바로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이 꼽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교과서에서 서술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제점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김종욱 등(2014)에서는 ‘카스피 해는 호수인가, 바다인가?’라는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료에 이어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토론 활동과 조사 활동이 이어진다(표 2). 김종욱 등(2014)은 세 교과서 중 카스피 해 분쟁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과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탐구활동의 중요성, 즉 교과 내용의 전반적 이해는 물론 고차사고력의 함양과도 관련 있다는 점(김한나·김영호, 2016)까지 고려하면 이 교과서에서 카스피 해 관련 부분의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밑줄 친 문장을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 해를 바다로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1993년 아스트라한 회담을 근거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1998년 이란과 호수로 공동 사용을 해야 한다는 합의를 한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러시아 입장인 경우에도 해저를 바다로 간주하여 분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국 협의에 따른 새로운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러시아가 카스피 해를 바다로 인정하게 되면 카스피 해 연안에 미국이나 영국의 군함이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방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정책과 이러한 해석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학생들이 진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

표 3. 김종욱 등(2014)의 카스피 해 자원 분쟁 관련 내용

탐구) 카스피 해는 호수인가, 바다인가?
<p>* 다음은 카스피 해와 관련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해보자.</p> <p>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 둘러싸인 카스피 해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보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접해 있는 해안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영유권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이란은 호수로 간주하여 이와 인접한 5개국이 균등하게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타협점을 제시하였는데, 자원 채굴권과 관련된 해저는 바다로 간주하여 분할하고, 어업권과 관련된 수면은 인접국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관련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고, 외부 세력까지 자원 개발에 참여하면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스피 해를 호수와 바다 중에서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2. 자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자.

출처 : 김종욱 등, 2014:215.

는 기준에 대한 자료나, 기준 설정에 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토론의 쟁점을 잡아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구 활동이 호수와 바다의 기준 설정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면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상복 등(2014)에서는 본문으로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카스피 해 자원 분쟁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4). 다른 교과서와 달리 본문에서 직접 자원 분쟁의 사례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의 첫 번째 밑줄을 보면, 바다가 될 경우 해안선의 길이만큼 자국의 영해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카스피 해 문제에서 12해리에 불과한 영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200해리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카스피 해가 호수로 인정될 경우 20%의 균등 분할이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이란의 주장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호수의 경우에도 분할 방법은 각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정적인 서술은 오개념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현재까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 해를 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역시 현실적이라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권동희 등(2014)의 경우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을 간단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표 5).

표 5의 밑줄 친 문장을 보면,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란의 경우 새롭게 호수로 주장하고 있다기보다는 1921년 조약에 의거하여 1/5의 지분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 해를 호수로 봐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은 모두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보아 연안의 길이에 비례하는 배분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역과 바닥을 분리하여 협정을 맺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볼 경우 서방 세력의 카스피 해 진출이 가능해지기에 러시아의 입장에서 카스피 해를 바다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기반한 고찰

2009 개정 교육 과정은 세계지리 '갈등과 공존의 세계' 영역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다음 표 6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4. 위상복 등(2014)의 카스피 해 자원 분쟁 관련 내용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된 카스피 해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은 각국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바다가 될 경우 연안국이 해안선 길이만큼 자국의 영해권을 주장할 수 있고, 해저의 자원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호수일 경우 주변 5개국이 공동 관리 및 균등 분할을 통해 20%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앞바다에 풍부한 석유,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선이 짧거나 자원이 많지 않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호수의 균등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위상복 등, 2014:243.

표 5. 권동희 등(2014)의 카스피 해 자원 분쟁 관련 내용

세계 속으로) 카스피 해 주변 국가의 갈등

카스피 해에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연안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이 대립하고 있다. 카스피 해가 호수라면 이곳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연안국이 함께 관리하지만, 바다로 인정한다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인정되어 독점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보고 자원을 연안국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은 바다로 간주하여 각국의 연안 길이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권동희 등, 2014:231.

(가)를 보면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의 사례를 조사한 후, 그 배경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되어 있다. 즉, 카스피 해의 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카스피 해가 호수냐 바다냐에 대한 논쟁은 그 본질적인 배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카스피 해의 사례는 1921년 조약이 분리 독립국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변용되어야 형평한 자원 분배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카스피 해의 사례를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쓰고자 한다면, 자원의 분포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지리적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풍부히 제공하고 자원 갈등 문제에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표 6의 서두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연관성을 지닌 문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갈등을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케일에서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스피 해를 둘러싼 갈등을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카스피 해의 갈등이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며, 이 때문에 연안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직접 점령하려 했었다면 작금에는 송유관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물론 송유관 갈등에 대해 지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각 나라의 입장에서 송유관 루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도 위에 표현해보고, 각 나라 입장을 대표

하여 토론을 해 보는 학습 활동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이해 이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이다. 지리적 현상은 보편성과 규칙성을 지니는 동시에,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지닌다. 이 지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갈등의 특수성이 오히려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갈등 해결에서 있어 지리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도 다양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또한 찾을 수 있다.⁵⁾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의 사례도 '자원 분쟁'에만 주목한다면, '카스피 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놓칠 수가 있다. 따라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에 대해 이해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 카스피 해의 갈등이 자원 분쟁이라면, 왜 '카스피 해'에서 자원 분쟁이 일어나는가?
(자원이 있음에도 분쟁이 없는 지역은 왜 그런가?)
- 카스피 해가 바다냐, 호수냐의 문제는 '각 나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내륙해 혹은 대형 호수임에도 이 논쟁이 없는 지역은 왜 없는가?)
- '카스피 해 지역'에 송유관을 꼭 설치해야만 하는가?
(자원이 있는데도 이 정도 규모의 송유관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은 왜 그런가?)
- '카스피 해 지역'에서는 왜 송유관과 관련된 갈등이

표 6. 세계 지리 '갈등과 공존의 세계' 영역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

세계화로 인해 특정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저편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구상에는 환경, 영토, 경제 활동, 문화 등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 단원에서는 환경,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가) 국가 영역 및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의 사례를 조사 한 후, 그 배경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나) 종교,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지역을 주요 사례(예, 이슬람권의 갈등,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 벨기에 등의 종교, 언어 갈등)를 통해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다) 자유 무역 협정(FTA)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지역·지구적 관련성을 가진 환경 문제를 사례를 통해 조사하고, 공존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일어나야만 하는가?
(송유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거나, 거의 없는 지역은 왜 그런가?)

VI. 결론

결국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은 카스피 해가 ‘바다인가, 호수인가’에 대한 지리적 판단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카스피 해의 경계 획정에 대한 각 지역의 지정학적 대응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연방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는 영향력을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했던 반면, 신생 독립국들은 카스피 해를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정당하게 러시아의 영향력에 벗어날 의도를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서방 세력들의 카스피 해 접근에 따른 러시아 외교 정책의 변화로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바다와 수면의 분리라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이란은 기존 조약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약한 국력과 좋지 않은 개발 여건 등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정황은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이 바다냐, 호수냐의 논쟁을 넘어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세계 지리 교과서들은 호수이면 공유 사용, 바다이면 영역 설정에 따른 분리사용이라는 전제로,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을 호수와 바다 논쟁이라는 지리적 프레임 수준에서의 제시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서술 역시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호수바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의 입장 변화를 지정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철웅(2012)은 지정학 같은 새로운 지리학의 연구 성과가 지리교과에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카스피 해 자원 분쟁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카스피 해를 둘러싼 연안국 스케일을 넘어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이해 또한 요구된다. 카스피 해 논쟁의 핵심이 다른 자원 분쟁이며, 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송유관 경쟁에서도 알 수 있듯 몇몇 나라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을 다룰 때는 바다-호수 논쟁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송유관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분쟁의 본질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세계 지리 교과에서 쓰일 사례로서의 적절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이해는 물론, 카스피 해 자원 분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자원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며, 자원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각기 그 양상은 다르기 때문이다.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와 해결방안 고찰을 위해서는 ‘카스피 해’ 그 자체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이 카스피 해가 ‘바다냐, 호수냐’보다는 ‘왜 카스피 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놓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註

- 1) “Caspian Sea”, World Lakes Website, <http://www.worldlakes.org/lakedetails.asp?lakeid=8762>
- 2)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서구에 우호적이기도 했다(이경완, 2011).
- 3)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은 19세기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저지하려는 대영제국 간의 세력 다툼을 뜻하며, 21세기 석유와 가스 운송 루트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새로운 패권 다툼이라는 뜻에서 “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표현한다(이장규·이석호, 2006).
- 4) 3대 경계획정사건(trilogy of cases)에는 본문에 나오는 메이만 사건,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외에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이 있다.
- 5)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접근, 즉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활용한 지리수업에 대해서는 이동민·권은주·최재영(2016)과 이동민·최재영(2015)에서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강삼구, 2010,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카스피해지역 패권정책: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2(1),

175-211.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와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권동희·안재섭·오정준·이승철·신현중·조지욱·신승진,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육.
 권오영, 2015, “카스피해 서안-코카서스 남쪽에서 동서 문화의 접면,” 역사학보, 226, 427-466.
 김미선 역, 2014, 「지도로 보는 세계지명의 역사」, 서울: 이다미디어.
 김연구·염구호, 2006,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국제지역연구, 10(2), 25-54.
 김종욱·주경식·서정훈·김태환·박용우·장성문·김남기·최재희·박재현·김선아,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교학사.
 김한나·김영호, 2016,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 ‘거주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5(3), 241-261.
 박주식, 2004. “카프카즈, 카스피 지역문제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평화연구, 12(2), 153-180.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위상복·유진상·이두현·강재호·강성열·조철민·최종필·김지현·윤정현·이우평·우연섭·이훈정·유성중·최희만·최규학,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비상교육.
 이경완, 2011,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광구 개발 기업들의 CSR 고찰: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1(2), 279-308.
 이동민·권은주·최재영, 2016,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 적용 방안 모색,” 한국지리학회지, 5(3), 263-273.
 이동민·최재영, 2015,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초등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에서의 지역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2), 1-17.
 이성규, 2005,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마러·중간 마찰, 에너지경제연구, 4(2), 149-179.
 이장규·이석호, 2006, 「카스피해 에너지전쟁」, 서울: 올림.
 이창위, 2005, “정책중심적 법학의 관점에서 본 경제획정과 독도에 대한처리,” 국제법학회논총, 50(2), 211-236.
 정옥경, 2006,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슬라브학보, 21(2), 381-400.
 정인섭, 2014, 「신국제법 입문」, 서울: 박영사.

정인섭·정서용·이재민, 2012, 「국제법 판례 100선」, 서울: 박영사.
 제성훈, 2010, “카스피해(Caspian Sea)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러시아 서남부의 경계문제,” Russia & Russian Federation, 1(3), 57-65.
 제성훈, 2011,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제 확장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보, 26(1), 129-162.
 최홍배, 2000, “ICJ의 북해 대륙붕사건에 대한 판례연구,” 해상법 연구, 12(1), 187-203.
 Aladin, N. and Plotnikov, I., 2004, The Caspian Sea, Lake Basin Management Initiative, 1-29 (Thematic Paper, <http://www.worldlakes.org/uploads/Caspian%20Sea%2028Jun04.pdf>, 2017년 7월 25일 최종 접속).
 Shukiurov, K., 2008, The Caucasus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Turkmanchay Treaty was signed 180 years ago, *The Caucasus & Globalization*, 2(4), 141-148.
 뉴시스, 2015년 7월 14일자, “[취재후] ‘뉴 그레이트 게임’ 카스피해 바다인가? 호수인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2255&ref=A>(2017년 7월 25일 최종 접속)
 에너지경제, 2016년 11월 25일자, “자유가로 신음하는 카스피해 연안 산유국,”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51882>(2017년 7월 25일 최종 접속)
 World Lakes Website, <http://www.worldlakes.org> (2017년 7월 25일 최종 접속)
 교신 : 최재영,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image7@snu.ac.kr)
 Correspond : Jae Yung Choi,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image7@snu.ac.kr)
 투 고 일: 2017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7일
 투고확정일: 2017년 8월 15일